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 9. 20(화) 총 4매(본문4)	
담당 부서 건축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엄정희, 사무관 박형재, 주무관 권희만 • ☎ (044)201-3755, 4082, 4752	
보 도 일 시	2016년 9월 2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방송인터넷은 9. 20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“지진에 안전하도록...”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

– 내년부턴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, 기존건축물 보강시 인센티브도 –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.8의 지진 및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.
 -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총리주재 ‘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 회의’에서 정부가 발표한 「지진방재 개선대책」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.
 -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,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, 관계 기관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께 개정될 예정이다.
- 「지진방재 개선대책」에 따라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,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있다.

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(또는 연면적 500㎡ 이상)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(또는 연면적 500㎡ 이상)의 건축물 까지 확대한다.

-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'88년 「건축법」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로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,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번에 2층 이상 까지 확대한 것이다.

② 이와 함께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.

-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, 용적률, 대지 안의 공지,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.

③ 이 외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.

□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,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,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내년 1월, 2월에 시행되는 「건축법」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.

① 「건축법」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데,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'진도'로 나타내고,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.

②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㎡ 이상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·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*를 마련하였으며,

*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, 검토항목, 평가비용, 세부절차 등 규정

③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명·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*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다.

* 사망자 수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: 1년(10명 이상), 8개월(6~9명), 4개월(5명 이하)
재산 피해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: 6개월(10억원 이상), 4개월(5~10억원), 2개월(5억 이하)

④ 또한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되어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, 기초 등의 시공과정에 대해 동영상 촬영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하여 추후에도 건축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.

□ 그 밖에도 현행 관련 제도 운영상 발굴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건축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있다.

① 건축법상 다락의 층고가 1.5미터(경사지붕 1.8m)이하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으나, 그 외 별도의 기준*이 없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여 앞으로는 다락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

* 다락 설치가능 건축물 용도, 다락 출입(외부계단을 통한 출입) 제한 등

② 이외에도 설계·시공·공법이 특수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'특수구조건축물'의 여부와 그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.

- 국토부 관계자는 “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,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” 며 “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박형재 사무관(☎ 044-201-40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